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17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문금주・이개호・김문수
어기구・이정문・김기표
서삼석・조인철・전진숙
정진욱・朴芝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법률 제 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재산·연령에 관계없이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부 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재산·연령에 관계없이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5. ~ 9. (생 략)	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